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9 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 : 임이자 · 김태호 · 김형동

김위상 • 곽규택 • 김성원

김종양 · 김승수 · 최수진

권영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.

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, 현행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의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, 즉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로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.

이에 재해조사가 동종·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·과학적으로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의2 신설 등).

또한, 현재는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(이하

"공단등"이라 한다)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,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 재함.

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56조제1항 후단, 제56조제3항·제4항, 제162조제3호의2,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).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고용노동부장관"을 "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(이하 "공단등"이라한다)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 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을 할 수 있다.

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6조의2(중대재해 원인조사 공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·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.

- 1.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- 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명칭 및 경영상 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혂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 조사의 공개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자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2조의2(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공단등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70조제2호 중 "고용노동부장관"을 "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56조제1항 후단·제3항·제4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	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
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	
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	
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	
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	
조사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
	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에 대한
	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
	위하여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
	관계전문가(이하 "공단등"이라
	한다)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
	<u>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	③
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	
<u>고용노동부장관</u> 의 원인조사를	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
방해해서는 아니된다.	
	–.
<u><신 설></u>	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
	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
	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
	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
	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

④ (생 략) <신 설>

- <u>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을</u> <u>할 수 있다.</u>
- ⑤ (현행 제4항 같음)
- 제56조의2(중대재해 원인조사 공 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 ·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 대재해의 발생 원인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 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외하여야한다.
 - 1.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 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명칭 및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

제162조(비밀유지)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4. ~ 1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제17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

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
되는 사항
③ 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
인 조사의 공개 방법 및 절차,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
동부령으로 정한다.
세162조(비밀유지)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
조사에 참여하는 자
4. ~ 13. (현행과 같음)
세162조의2(벌칙적용에서의 공무
원 의제) 제56조제1항에 따라
조사에 참여한 공단등은 「형
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
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
원으로 본다.
데170조(벌칙)

하의	징역	또는	1천만원	이하
의 별	벌금에	처한디	ŀ.	

- 1. (생략)
- 2. 제56조제3항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 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 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

3.	\sim	8	(생	략)
Ο.		O.	\ 0	1/

1. (현행과 같음)
2
고용노동부
<u> 장관 및 공단등</u>
3 ~ 8 (현행과 같음)